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1월 26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1월 26일

3. 제안이유

-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1998. 2. 24, 법률 제55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가. 직장협의회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제2조)

나.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제3조)

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제4조)

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98. 2. 24)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위한 도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설립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였고 협의회의 가입 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